

춘천지방법원 2022. 2. 16 선고 2021나302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2. 16 선고 2021나30270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20. 12. 23 선고 2019가단5490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의 파산관재인
변호사 C

피고, 항소인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일

변론종결 2022. 1. 27.

판결선고 2022. 2. 16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가단5490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23,231,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8. 1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미연, 판사 김현정, 판사 송종선